

충청북도의 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2
----------	-----

제출연월일 : 2001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사회가 다변화, 복잡화함에 따라 이에 대처할 의용소방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으로 인한 현장출동에서의 활동이 어려워 정년제도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차등제로 하는 한편 대장 등에 대한 임기제한을 폐지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며,
- 소방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화재취약시기에 소방관서에 근무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재해발생시 대원들의 재해에 맞는 가료를 함으로써 대원들의 사기를 양양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추상적 임용기준 삭제 및 대원의 정년제도 도입(제5조)
- 임용기준에 있어서 “관할 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규정 삭제
 - 대원의 정년제도 도입
 - 도시지역 : 간부 60세 이하, 대원 58세 이하
 - 농촌지역 : 간부 65세 이하, 대원 63세 이하

나. 기술지원업무의 강화(제8조)

- 화재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기능보유자 활용을 위한 기술 인력을 확보도록 함

다. 대장의 연임제한 폐지와 지역대장 및 부대장, 부장, 반장의 임기제 도입(제11조)

- 정년제 도입으로 인한 연임제한 폐지 및 부대장·부장·반장의 임기제 도입으로 대원의 활력소 제공

라. 대원의 해임권한 강화(제14조)

- 교육·훈련에 연4회 이상 불참시 해임하도록 함

마. 복무의무 다양화(제16조)

- 소방관 인력부족 농촌지역의 소방출장소에 의용소방대원이 보조근무 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 강화함

바. 재해보상비의 현실화(제26조, 제28조, 제29조)

-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의 현실화 및 장애등급과 지급기준을 현실화 함

□ 의안전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조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0세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5세로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소화반, 구조반”을 “진압반·구조구급반”으로, “예방반, 훈련반”을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장등의 임기) 대장 및 여성대장,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연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제16조제1항중 “화재발생”을 “화재, 구조·구급등 발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중 “지방소방사 4호 봉급연액 80%”를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으로 한다.

제28조중 “지방소방사 4호봉”을 “지방소방사 10호봉”으로 한다.

제29조중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3년분”을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복제(표식장)중 계급장의 정장란, 소방모중 소방모의 작업모란, 복제중 제복의 작업복 및 재킷란, 소방화중 기동화란, 부속물중 부속물의 허리띠 지질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중 복제(여성대원)중 소방모의 작업모란, 제복의 작업복란 및 소방화의 기동화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장 및 여성대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 임기를 적용 받는 지역대장은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의 용 소 방 대 업 무 분 장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비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수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반	1. 소방대상물 검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서식)

복 제 (표식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계 정 급 장 장	지질	금색금속지로 한다.	반장은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식	1. 대장의 것 : 반장의 것 4개를 0.2 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2. 부대장, 지역대장의 것 : 반장의 것 3개를 0.2 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3. 부장의 것 : 반장의 것 2개를 0.2 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옆으로 배열한 것으로 한다.	1. 반장의 것 : 지름 0.7 센티미터의 태극을 중심으로 일변의 길이 1.0 센티미터의 정육각형이 되도록 터빈무늬를 감싼 것으로 한다. 2. 대원의 것 : 관창에서 방수하는 모양으로 관창은 가로 5mm, 세로 5mm이고 방수모양은 마름모형으로 높이 15mm, 폭 12mm로 전체높이 20mm 크기로 제작한다.	별도 1 가: 계급장 <input type="radio"/> 반장이상 <input type="radio"/> 대원

소 방 모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방 모 모	지질	연한회색 목면직지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나. 작업모
	제식	도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다.	

복 제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제 작 업 복 복 의	지 질	연한회색 목면직지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 작업복 (1) 상 의
	상 제 식	1. 노타이식깃에 전면중앙에 한줄로 5개의 단추를 단다. 2. 긴소매로 소매끝에는 불입식 단추를 달고 흥부 좌우에 걸불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3.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단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아 한다.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작업복	하의	지질 상의와 같음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2) 하의 • 앞면 • 뒷면
		1. 정복의 하의와 같이 한다 2. 앞뒤로 속주머니를 하고 전면에 주름을 적당히 둔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복	재킷	지질 주황색 목면직지(면 35%, 폴리에스테르 65%)	부장 이상과 동일	별도 3 마. 재킷 (1) 앞면 (2) 뒷면
		1. 겉감은 맞접어 박은 다음 접어 겉박아야 한다. 2. 목선모양은 브이형으로 하며 어깨가 편안하게 한다. 3. 윗주머니를 좌우 양쪽에 14*16센티 크기의 주머니를 달고 뚜껑은 6센티 크기로 하여 안으로 벨크로를 부착한다. 4. 아래주머니는 좌우 양쪽에 18*22센티 크기의 주머니를 달고 뚜껑은 7센티 크기로 하여 안으로 벨크로를 부착한다.	부장 이상과 동일	

소 방 화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방화	기동화	지질 흑색피혁으로 한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 기동화
		제식 군용전투화(워커화)와 같이하고 안부분에 작크를 부착한다.		

부 속 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부 속 물	허리티	1. 박클은 니켈금속지 2. 띠는 동복은 흑색, 하복은 쥐색 목면지 3. 작업복 : 연한회색 목면지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3) 허리띠(박클)
		1. 박클 : 세로 37mm, 가로 53mm 니켈 박클로 중앙에 한켠이 12mm, 대각선 15mm "햇불"을 얹각한다. 2. 벨트 : 너비 32mm, 두께 4mm 적당한 길이로 하고, 끝에 15mm 철핀을 안팎으로 붙인다.	부장 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복 제 (여성대원)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방모	작업모	지질	연한회색 목면직지	부장 이상과 같이 한다.
		제식	원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	"
제복	작업복	지질	남자 의용소방대원 제복과 겉이 한다.	부장 이상과 같이 한다.
		제식		
소방화	기동화	지질	흑색괴혁으로 한다.	부장 이상과 같이 한다.
		제식	구두끈이 있는 보통의 단화형으로 한다.	

〈별도 1〉

표식장

가. 계급장

○ 반장 이상

○ 의용소방대장

한복 : 일자비녀



○ 의용소방대 부대장·지역대장

한복 : 일자비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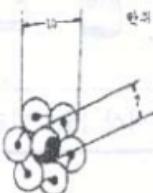
○ 의용소방대 부장

한복 : 일자비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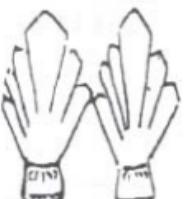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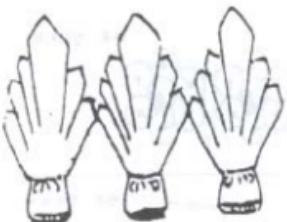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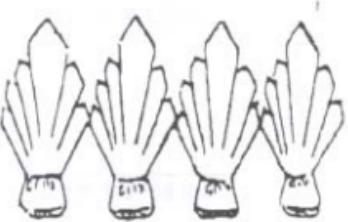
○ 의용소방대 반장

한복 : 일자비녀



※ 지침 : 금색 금속지(반장 이상은 현행대로 즐자)

○ 대원

	
의용소방대원입대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15년 미만	15년이상

나. 표 장 : 현행과 같음

다. 지휘장 : 현행과 같음

라. 뗏지 : 현행과 같음

〈별도 2〉

소방모

가. 정모 : 현행과 같음

나. 작업모



다. 방수모 : 현행과 같음

라. 모장 :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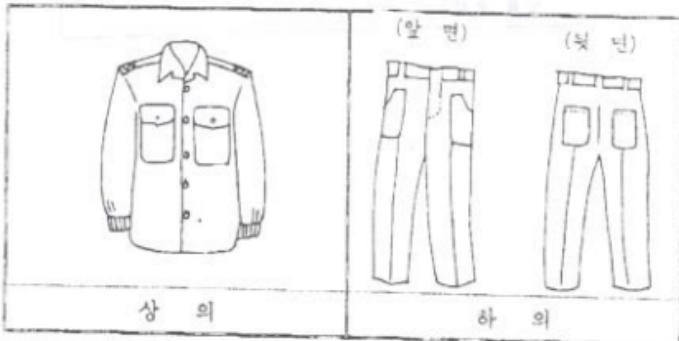
〈별도 3〉

제복

가. 동정복 :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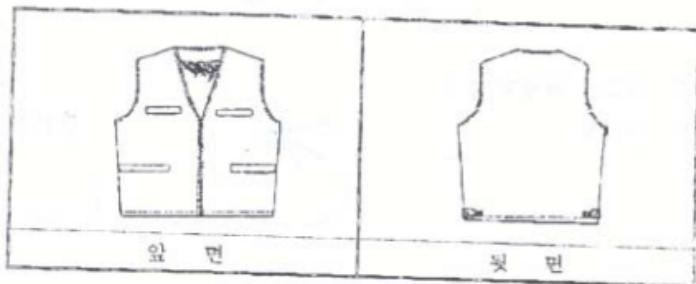
나. 하정복 : 현행과 같음

다. 작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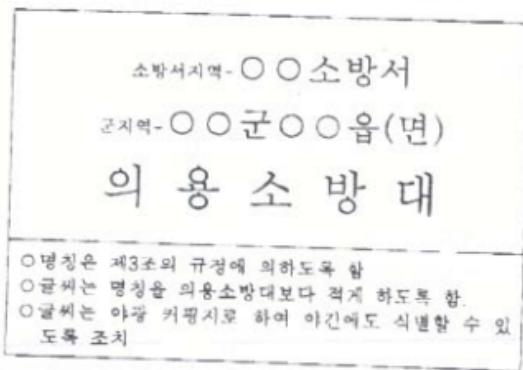


라. 방수복 : 현행과 같음

마 재킷



○ 뒷면 글씨



(별지 제9호서식)

장애등급표

장애등급	장애의정도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두팔을 손목관절 이상 잃는 사람 두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잃는 사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팔을 팔굽관절 이상 잃은 사람 한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잃은 사람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발을 발목발바닥뼈 관절 이상 잃은 사람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팔을 손목관절 이상 잃는 사람 한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다리를 발목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등급	장애의정도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두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 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한발을 발목발바닥뼈 관절 이상 잃은 사람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한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 5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 이상이 있는 사람 두눈의 눈꺼풀이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두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장애등급	장애의정도
제 5 급	<p>13.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4.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p> <p>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p>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p>
제 6 급	<p>1. 한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2.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p> <p>3. 한눈의 빈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 이상이 남은 사람</p> <p>4.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p> <p>5. 한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p> <p>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p> <p>7. 한손의 셋째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p> <p>8.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p> <p>9. 8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10.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p> <p>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p> <p>13.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14.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p> <p>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p> <p>16. 한손의 셋째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p> <p>17.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p> <p>18.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p>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p> <p>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p> <p>21. 기타 제1급 내지 제6급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14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p>

신체등급별장애보상

등급	보상금
1급	사망보상금의 100/100
2급	사망보상금의 88/100
3급	사망보상금의 76/100
4급	사망보상금의 64/100
5급	사망보상금의 52/100
6급	사망보상금의 40/1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임용기준) (생략)</p> <p>1. 관할 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생략) 3. (생략) (신설)</p>	<p>제5조(임용기준) (현행과 같음) <삭제></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0세로 한다. 다만, 유·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5세로 할 수 있다.</p>
<p>제8조(업무분장) ① 의소대 또는 지역대에는 총무부,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구조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④ (생략)</p>	<p>제8조(업무분장) ① _____ _____ _____</p> <p>친압반·구조구급반 _____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 _____</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대장들의 임기) 대장 및 여성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1조(대장들의 임기) 대장 및 여성대장,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부장,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14조(해임사유)</p> <p>1.~4. (생략) (신설)</p> <p>5. (생략)</p>	<p>제14조(해임사유)</p> <p>1.~4. (현행과 같음) 5. 절당한 사유없이 연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현행과 같음)</p>
<p>제16조(복무의무) ①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여 화재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생략)</p>	<p>제16조(복무의무) ① _____ _____화재, 구조·구급 등 발생 _____</p> <p>②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출동수당)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출동수당은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서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제23조(출동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6조(요양보상)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서 4호 봉급년액 8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6조(요양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_____지방소방서 10호봉 봉급연액 80% _____</p>
<p>제28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서 4호봉의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p>	<p>제28조(장제보상) _____</p> <p>_____지방소방서 10호봉 _____</p>
<p>제29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서 4호봉 봉급액의 3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p>	<p>제29조(유족보상) _____</p> <p>_____지방소방서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_____</p>

관계 법령 발췌

□ 소방법 제86조(의용소방대의 설치)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되어,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服制)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